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20.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2. 사업내용

#### □ 참여대상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판단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 지원사항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지원(2+1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구 분	SVI 탁월	SVI 우수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제한없음		30인 미만 사회적 기업

※ 지원금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174시간)으로 일정액 지원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지원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 신규고용 6개월 후\* 매월 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

\*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이후 매달지급)

- 신규고용일이 공고 이후 약정이전인 경우 고용월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나, 지원금은 약정월 이후분만 지급

## □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 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가능
    -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 참여근로자 제한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 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

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별지 제4호의2 서식]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고용보험기준)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증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

\* (시간제) '26.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26.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26.3.18.부터 '26.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일자리창출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

구 분	분류 기준	지원요건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8시간 또는 6시간 참여) 등	중복여부에 관계 없이 참여제한	○	×	×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참여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	○	○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25년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의 경우도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예시1) 참여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6.3.1. '○○ 주식회사'에 취업하고 2026.6.30. 퇴사한 후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2026.7.1. 취업하였을 경우, '참여예정자 명단'을 2026.8.1. 제출하여 채용일(2026.7.1.)로부터 6개월 이내일지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취업한 자가 아니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 (예시2)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4.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예시3)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이 2026.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참여기업에 2026.1.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④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⑥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단, 지원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자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목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 ○ 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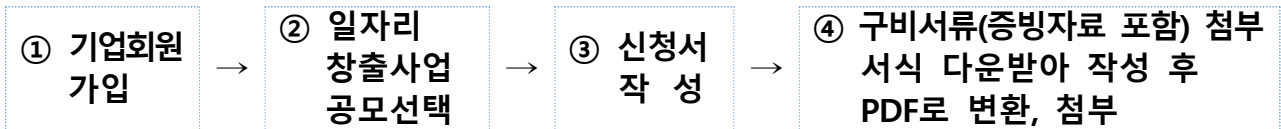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 그밖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3. 신청 및 접수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2026. 5. 5.(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http://www.seis.or.kr)) 신청

※ 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문의처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선정결과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서식 4)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 ('25.3월부터 '26.2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7.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8.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10. ('26.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서식 6)
11.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 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 5. 심사 및 선정 계획

- 심사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예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li> <li>-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li> <li>*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li> </ul>	정성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목적 재투자</li> <li>-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li> <li>-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li> </ul>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성과</li> <li>-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li> <li>-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li> <li>-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li> <li>-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li> <li>-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li> </ul>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li> <li>-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li> <li>-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li> <li>-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li> </ul>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성과</li> <li>-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li> <li>-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li> <li>-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li> <li>-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li> <li>-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li> </ul>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의 우수성</li> <li>-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li> <li>-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사업의 경쟁력 등</li> </ul>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li> <li>-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li> <li>-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li> <li>-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li> <li>* SVI 14번 지표</li> </ul>	정성 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6.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7.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군)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	경제정책과	250-4370	영월	경제과	370-2724
원주	경제진흥과	737-2952	평창	경제과	330-2467
강릉	소상공인과	640-5018	정선	경제과	560-2357
동해	경제과	530-2299	철원	경제진흥과	450-4829
태백	경제과	550-3895	화천	지역경제과	440-2355
속초	지역경제과	639-2268	양구	경제체육과	480-7123
삼척	경제과	570-3353	인제	경제산업과	460-2383
홍천	경제진흥과	430-2841	고성	경제체육과	680-3734
횡성	경제정책과	340-2059	양양	경제에너지과	670-2179

**별표 1****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별표 2****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 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954,704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 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사회복지	<p>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p> <p>*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p>	<p>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p>
환경	<p>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p> <p>*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p>	<p>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p>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p>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p> <p>*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p>	<p>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p>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p>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p> <p>*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p>	<p>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p>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별표 4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